

★ ◎

본부장 방침 제114호

문서번호	송파주거복지센터273
보존기간	1년
결재일자	2016.03.29
공개여부	비공개(5)
일상감사	대상아님

팀 원	팀 원	송파주거복지센터장	남차역주거복지단장	주거복지본부장
				03/29
박래엽	최병진	이재익	이영철	이종언
협 조	법무지원실장 강기연			

세라믹몰딩 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강일3단지 하자소송 판결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SH공사
(송파주거복지센터)

강일3단지 하자소송 판결 검토보고

강일리버파크 3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세라믹물딩 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로 우리공사가 승소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 함

■ 관련근거

- 강남권역통합관리센터-6133호(2014.06.12. : 강일리버파크3단지 손해배상(기)등 청구의 소 응소(안)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6.03.24. : 2014가합534317 손해배상(기) 판결문)

■ 단지현황

- 단 지 명 : 강일리버파크 3단지
- 소 재 지 :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 93길 40
- 규 모 : 혼합단지 13개동 986세대 (임대 615 / 분양 371)
- 사용승인일 : 2009.03.11
- 시 공 사 : 삼환기업 주식회사,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사건개요

- 사건번호 : 2014가합534317 손해배상
- 원고 및 대리인
 - 원 고 : 강일리버파크3단지 공동주택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심우경
 - 대리인 : 법무법인 태인
- 피고 및 대리인
 - 피 고 : 에스에이치공사(피고1), 건설공제조합(피고2), 서울보증보험(피고3)
 - 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 이종석, 이동훈)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1,412,18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해서는 2014.6.3.부터, 15,514,723원에 대해서는 2015.7.9.부터, 24,897,457원에 대해서는 2016.2.2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가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판결내용

- 선고일 : 2016.03.24.
- 항소마감일 :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 판결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검토의견

- 피고인 우리공사가 승소함에 따라 별도 조치없이 본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 추후 원고인 강일3단지 공동주택대표회의가 항소할 경우 응소하고자 함

- 붙임 1. 강일3단지세라믹몰딩 하자소송 판결문
2. 강일리버파크3단지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응소(안). 끝.